

200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입장에 처해 있으며,
 -스포츠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이곳 상가는 지난 96년 7월 3일 서울시에서 계속 사용허가 조건으로 사용료를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128%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후 서울시는 점포사용 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허가기로 결정하고 화해조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상인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음.
 -그간 청원인들은 2002년 월드컵 특수를 대비하여 점포 수리와 사업영역 확대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왔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기간 중 많은 국가들에 스포츠용품 쇼룸코스로 소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관광코스로 지정되어 취재대상이 되고 단체주문 등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말로 만료되는 점포 사용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청원인들이 2002년 월드컵 특수를 대비하여 점포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넓히는 노력을 경주하여 국제적인 거래까지 형성되는 활발한 스포츠상가로 발전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거대한 스포츠 타운을 형성시킨 공로와 월드컵을 대비하여 청원인들이 이루어 놓은 국제 상거래 신인도를 지켜주는 의미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임대사용 기간을 2002년 월드컵경기 종료시까지 연장하여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건의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31
----------	-----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

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가. 제안이유

- 용암 4-2지구 11구획에서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현재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으며, 아파트 중간에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경계하므로 향후 주민 및 행정불편을 위하여 서대문구 지역을 은평구로 편입시키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 현재 용암 4-2지구 11구획에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입주예정임.
- 아파트 부지중 242평 정도가 서대문구 북가좌동 275-1로 되어 있고, 나머지(약 65%)는 은평구 용암동으로 경계가 분할되어 있어 주민 입주시에 행정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바, 서대문구 지역을 은평구로 흡수케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구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모두 찬성을 얻은바 있으며, 행정구역을 통일시키는 것이 향후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